

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

제 정	1995.	3.
개 정	2010.	9.
개 정	2012.	3.
개 정	2016.	7.
개 정	2024.	1.

제1조 (목적) 이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입시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무)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또한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(개정 2024.01.18.)

제3조 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각 모집 시기별로 위촉되어 해당 입학전형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시전형의 공정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입시전형의 주요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
3. 입학사정관제 관련한 사항
4. 기타 입시공정관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.

제7조 (기타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1.18.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